

학익SK VIEW 아파트 중도금대출 안내

- 대출대상**
 - ▶분양계약자 중 계약금 완납자(총 분양대금의 10%)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
 - ▶농협 거래고객 및 대출 취급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대출금리**
 - ▶기준금리(월중신규COFIX 6개월 변동) + 가산금리 [2.7%] = 4.54% (2022.06.10. 기준금리 1.84% 적용시)
 - ※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, 사업주체가 이자 선납 후 입주 시 대납이자 정산
 - ※대출금리는 기준금리+2.7%로 **대출실행일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가능**
- 대출한도**
 - ▶분양대금의 50% 이내 (중도금 2~6회차)
 - ※서민실수요자 해당자(아래①~③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)의 경우 60%이내, (중도금 1~6회차)
 - ①무주택세대주
 - ②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구입자 : 1억원 이하)
 - ③주택가격 8억원 이하(분양가)
 - ※정부의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.
- 대출기간**
 - ▶입주지정기간 최초일 + 3개월 이내 (2024년 12월 31일)

제출서류	공동서류 (필수서류)		소득증빙서류 (해당사항 택 1)	
	①분양(공급)계약서 원본 (계약금 영수증 포함)	②신분증 [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]	③인감도장	④인감증명서1부(본인발급)
제출서류	⑤주민등록등본1부 (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)	⑥주민등록초본1부 [주소변동 5년 포함]	⑦가족관계증명서1부	⑧국세납세증명서1부 [2022년 6월 13일 이후 발행분]
	⑨지방세납세증명서1부 [2022년 6월 13일 이후 발행분]	⑩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[전체내역] ※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 (팩스발급)	⑪소득증빙서류 [우측참조 해당서류발급]	⑫ 첨부된 동의서 작성 [유의사항 참조]
	⑫급여소득자 (택1)	⑬사업소득자	⑭연금소득자	⑮기타 (무소득자 포함) 오른쪽 필수 및 ①②③중 택 1
	⑯재직증명서(직인필)+소득금액증명원(2021년+2020년)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필)+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필) (2021년+2020년) ▶1년 미만의 재직자 및 당해 이직자는 급여발생 전체 기간의 급여명세표(회사직인필)+급여통장거래내역(은행직인필)으로 소득증빙	⑰사업자등록증(사본)+소득금액증명원(2020년+2019년) ▶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신규사업자는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제출	⑱연금증서(연금수급권자확인서)+통장거래내역확인서(은행직인필) ▶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권자	⑲국세청의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'사실증명원'(2020년) 및 ⑳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이상 내역) ▶분양계약자가 건강보험 지역세대주일 경우 또는 ㉑국민연금납입내역서(최근 3개월이상 내역) ▶분양계약자가 국민연금 납부자일 경우 또는 ㉒신용카드소득공제 확인서(2021년) ▶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또는 소득공제용 신용카드사용내역서 (카드사 발급)

접수일정

- ▶2022년 06월 21일 (화) ~ 2022년 06월 25일 (토) (5일간)
- ▶장소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415번길 3 (모델하우스)

부대비용 및 기타사항

- ▶수입인지대금 : 고객부담금 계좌이체

대출금액	수입인지대금	고객부담금
1억원초과~10억원이하	150,000원	75,000원

※수입인지대금은 중도금대출 자서 시 안내드리며, 미 입금 시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.

- ▶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 (단, 타금융기관 중도금대출로 전환시 0.6%)

▶ 세대별 주택보유수 확인을 위해 세대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전원의 개인(신용)정보동의가 필요하며 **첨부된 동의서(1~3번 모두)에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** 하며, **세대원 전원의 신분증을 지참**하셔야 합니다.

단, **세대원이 미성년자인 경우**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(**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지참**)가 필요합니다.(미성년자는 서명 및 날인x)

세대분리 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,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이 포함됩니다.

※세대: 세대별 주민등록표(외국인,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)상에 세대주,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
단, 세대분리 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,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도 포함

▶ **서민실수요자** 해당자는 배우자의 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㉕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, 배우자의 소득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청의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‘**사실증명원**’ 제출

▶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**6월13일 이후 발급분**에 한하며 **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**

▶ **부부 공동명의** : 공동서류 각각 준비 및 모두 방문 필요

▶ 외국인 및 재외국민: 「외국인등록증」 「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」 「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」 추가준비, (F4비자 대출가능, F5비자 대출불가) - 대출가능여부 문의必

▶ 대출 서류작성은 분양계약자 본인만 가능함 (**대리인 접수 불가**)

▶ 추후 심사 통과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은 자는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하여야 하며,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명의이전을 완료하여야 함

유의사항

- 본 안내문은 2022.06.10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여신취급은 당 농협의 내부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종 여신심사협의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 부적격자(대출 신청인이 신용관리정보 보유자(구 신용불량자)나 연체정보 보유자 등 심사결과 여신취급 제한자) 등에 해당될 경우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정부정책,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고객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 자격, 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거절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“**계약자 본인 책임**”으로 분양대금(중도금 등)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대출신청인에게 연체정보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작성한 내용이며, 실제 자세한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 신청 시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담당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중도금대출 담당농협 안내

세대구분	담당(취급)농협	연락처
101동, 103동	부평농협	032-500-2569, 2602
105동	거창농협	055-942-5831~5
107동, 112동	부천농협	032-320-2054~8
109동	삼척농협	033-571-8425~9
111동, 114동	인천축협	032-420-3603, 3605, 3618, 3638
113동	강동농협	02-440-3123~6

※ 상기 동호수에 배분된 농협은 사정상 추후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.